

극지법의 발전과정과 현안



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

교수 이 용 희

목 차

I. 극지법의 개념과 종류

II. 극지법의 발전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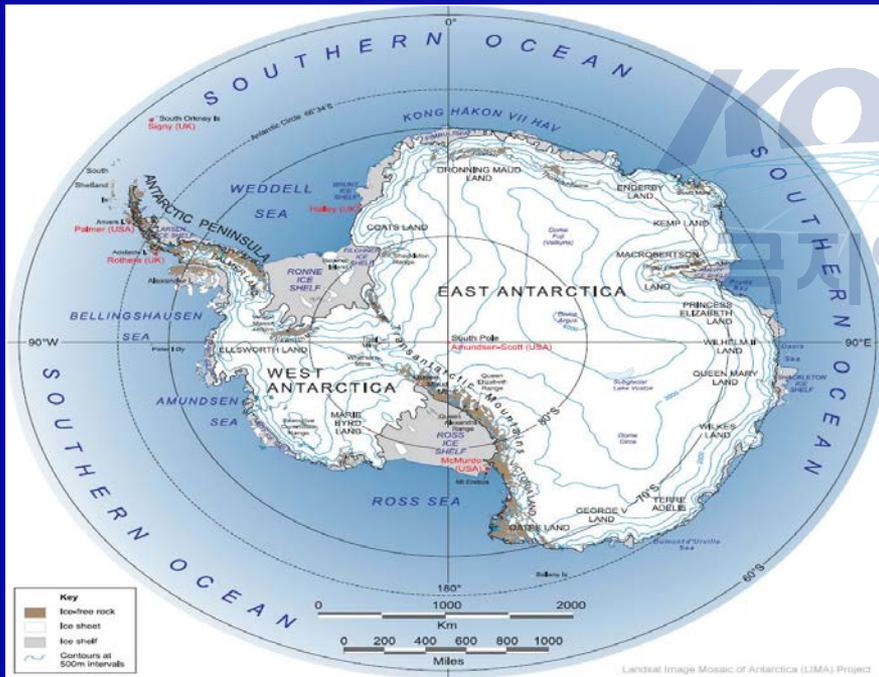
1. 남극과 북극의 법적 규율대상으로서의 특성

2. 남극법체제

3. 북극법체제

III. 극지법의 현안과 우리의 과제

I. 극지법의 개념과 종류



1. 극지법(Polar Law)의 개념

- 남극과 북극에 적용되는 법제도(Legal Regime)
-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포함
- 주된 규율 대상
 -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
 - 주권 및 관할권에 관한 사항
 - 생물 및 무생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
 - 원주민의 인권에 관한 사항
 - 항행에 관한 사항

2. 극지법의 종류

남북극 모두에 적용되는 법제도

- 기후변화기본협약
- 유엔해양법협약
- Polar Co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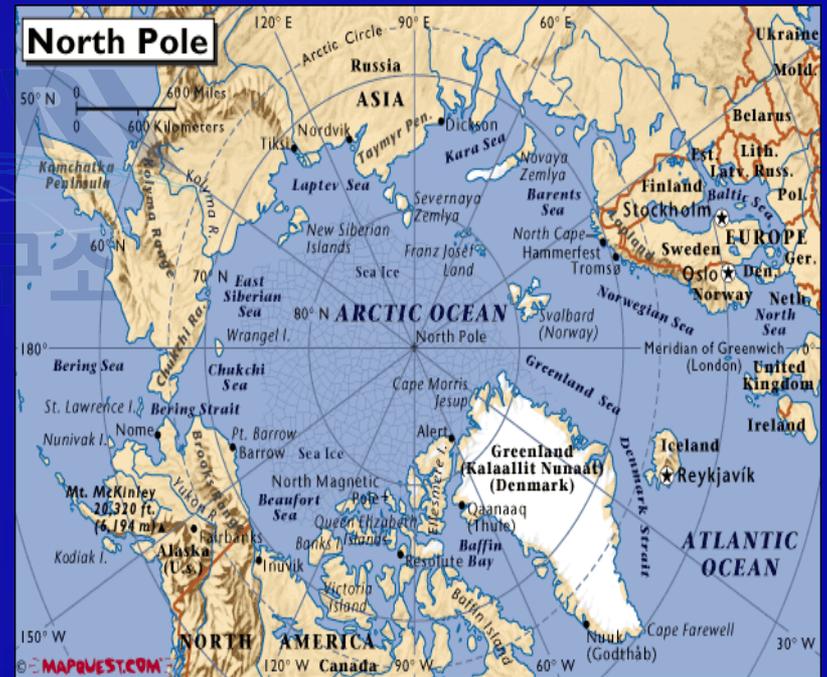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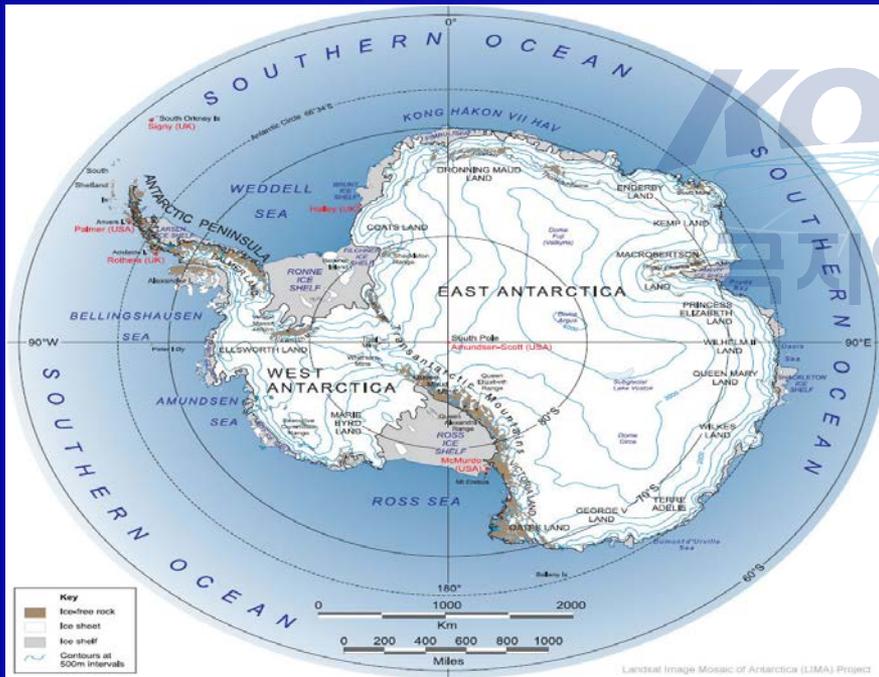
남극에만 적용되는 법제도

- 남극조약
-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
-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
- 남극물개보존협약

북극에만 적용되는 법제도

- �발바르조약
- 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 설치협정
- 북극 공중 및 해상수색구조협정
- 북극 해양기름오염 준비 및 대응협정
- 연안국의 국내법

II. 극지법의 발전과정



1. 남극과 북극의 법적 규율대상으로서의 특성

남 극

- 주권의 불분명
- 정주민구의 부존재
- 육지와 해양이 대상

북 극

- 주권국가의 존재
- 정주민구의 존재
- 주로 해양이 대상

2. 극지법 발전의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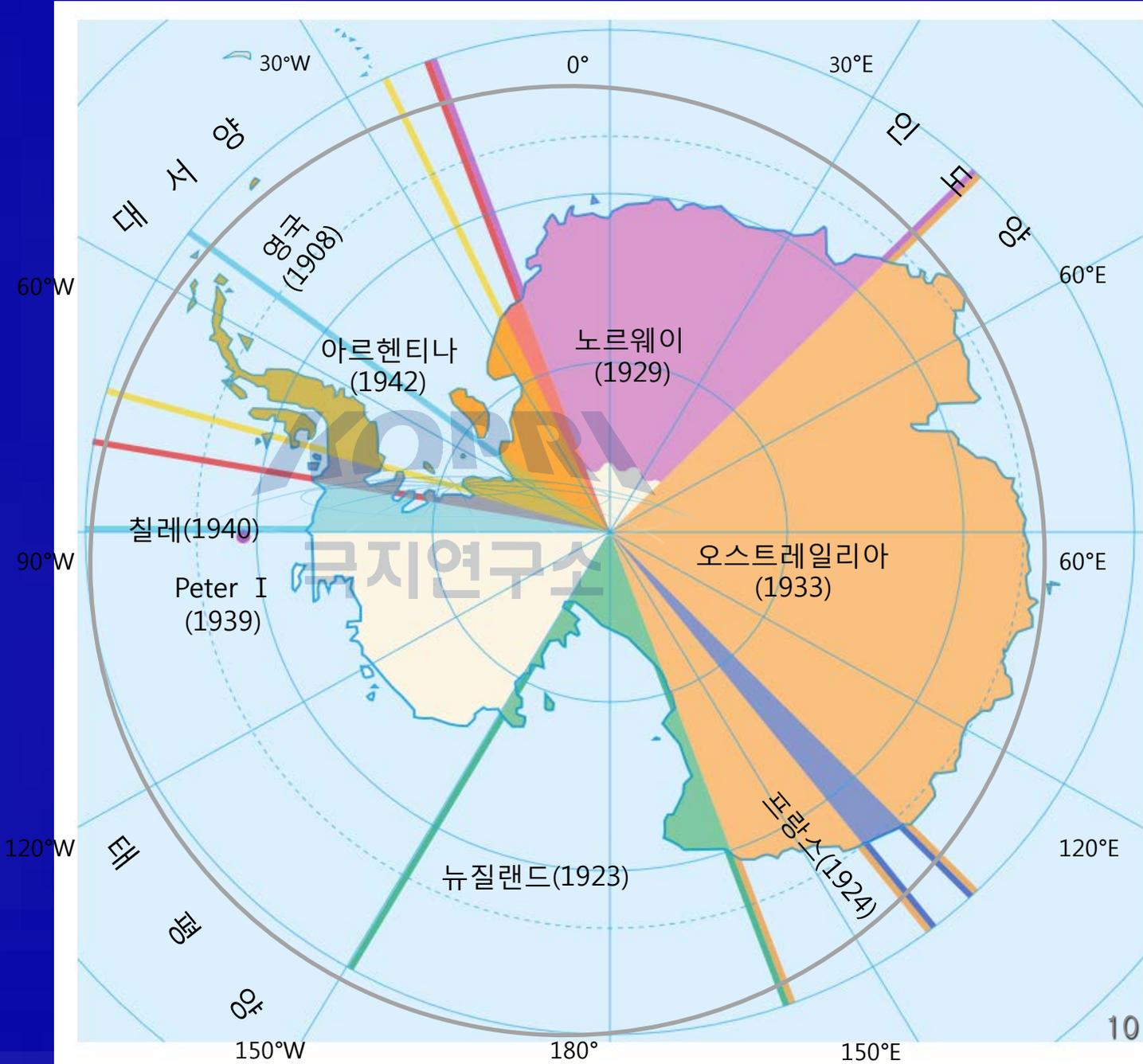
- 남극과 북극은 높은 경제적, 지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특
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20세기 중반까지 법적 규율의
대상이 되는 인간활동이 제한적으로 발생
- 남극의 경우 원격성이 추가되어 탐험과 발견의 대상으로만
존재
- 북극의 경우 연안국을 중심으로 어업과 석탄광업이 19세기
부터 존재하였으며, 영유권 분쟁과 항공로 이용 존재
-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극에 대한 인간활동이 증가, 영유권
이외의 어업, 관광, 탐험, 생물탐사, 환경보호 문제가 대두
-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북
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(해운, 어업, 자원 개발, 해양관
할권분쟁, 환경보호, 원주민 권익 보호등 다양한 법적 이슈
등장)

3. 남극법체제

- 영국이 1908년 남극 영유권 최초 주장 및 1940년까지 약 40회의 탐험 실시
- 뉴질랜드(1923), 호주(1933), 프랑스(1924), 노르웨이(1929), 아르헨티나(1942), 칠레(1940) 등 6개국이 발견, 탐험 또는 영토에서의 선형이론에 입각하여 영유권 주장
- 미국과 러시아는 영유권 주장 유보
- 벨기에, 덴마크, 독일, 일본, 스웨덴 등은 영유권 주장 배제
-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적 이용 정착을 위한 남극조약 채택후 남극조약체계라는 고유의 법체계 형성

각국의 영유권 주장 현황

- 영국
- 아르헨티나
- 칠레



- 1959년 IGY 주도적 참여국 12개국 중심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극조약(The Antarctic Treaty) 체결(영유권 국제분쟁 우려, WWII 이후 최초의 군비축소협약)
 - ✓ 영유권 주장 동결과 평화적 이용원칙 확립
 - ✓ 과학적 조사의 자유
 - ✓ 핵폭발 및 방사능물질 처분 금지
 - ✓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 사찰 수용
 - ✓ 2년마다 조약협약당사국회의를 개최
-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 체결
-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체결
- 1988년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체결(미발효)
- 1991년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체결(발효후 50년간 광물 자원 개발 금지)
- 2005년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(환경긴급사태로부터 발생하는 책임) 채택(미발효 상태)

남극조약체제상 조직

- 남극조약에 의해 설치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(ATCM)
 - ✓ Measures: 모든 협의당사국 승인시 구속력 보유
 - ✓ Decisions: 내부 조직 사안에 관한 사항
 - ✓ Resolutions: 권고적 문안
-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에 의해 설치된 환경보호위원회(CEP)
- 남극연구과학위원회(ATCM과 CEP의 옵서버로 권고기능 수행)
-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의해 2004년 설치된 남극조약 사무국
-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의해 설치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

4. 북극법체제

- 북극은 5개 연안국과 북극점을 중심으로 수백해리의 얼음으로 구성(원주민 존재)
- 전략적 및 상업적 항공로로서 중요
- 1909년 미국인 피어리가 북극점 발견
- 북극 상공비행 성공을 기점으로 선형이론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(러시아, 캐나다, 미국, 노르웨이, 덴마크, 핀란드)
- 북극 고유의 조약체제는 없으며, 현재 북극 연안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중(북극이사회가 중심 기능)
- 북극의 본질이 해양이며, 얼음에 대한 법적 지위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율 가능

북극이사회

- 1996년 오타와선언을 통하여 설치
-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간 포럼
- P5는 그들만의 폐쇄적 관리해역 구상
-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 태도
- 미국과 캐나다는 안보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
- 현재 북극이사회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
- 그러나 북극이사회는 정치적 결정권 및 대표성 미약, 향후 강화 전망
- 2013년 사무국 설치
- 2014년 북극경제이사회 창설
- 한/중/일 아시아국가의 북극 진출에 경계심 고조

정회원국/ 상시참석자	<u>미, 캐, 러, 노, 덴</u> , 스웨, 핀, 아이슬, 원주민(이누이트, 사미 등)	북극 연안국 +북극비연안 인접국+원주민
영구옵서버	영, 독, 불, 스페, 네덜, 폴란, <u>한, 중, 일, 싱, 이태, 인</u>	WG 참여
임시옵서버	EU	초대 조건부 참석
WG	모니터링평가 동식물보전 비상사태대응 해양환경보호 오염조치 지속가능개발	실질적 기능

북극을 대상으로 한 지역조약

- 1920년 스발바르조약
- 1973년 북극곰 보전협정
- 1980년 북동대서양어업에 관한 미래다자협력협약
- 1992년 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 설치협정
- 2011년 북극 공중 및 해상 수색구조협력협정(2013. 1 발효)
- 2013년 북극 해양기름오염 준비 및 대응협정

NEAFC 규제지역



북극 연안국의 해양법태도

구분	UNCL OS	심해저 이행협 정	공해어 업협정	영해	EEZ	CS	200+ CS
러시아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캐나다	○	○	○	○	○	○	
미국			○	○	○	○	
노르웨이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덴마크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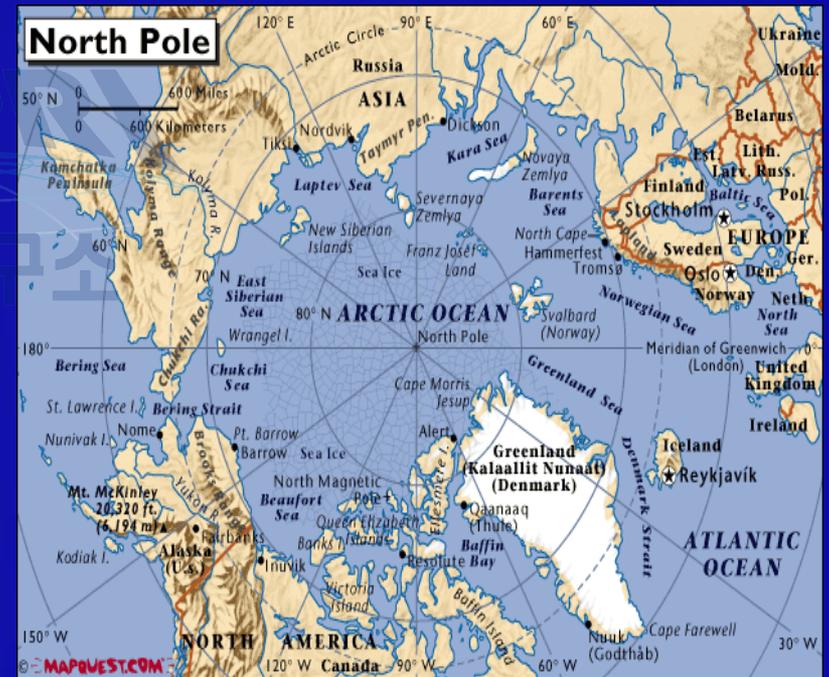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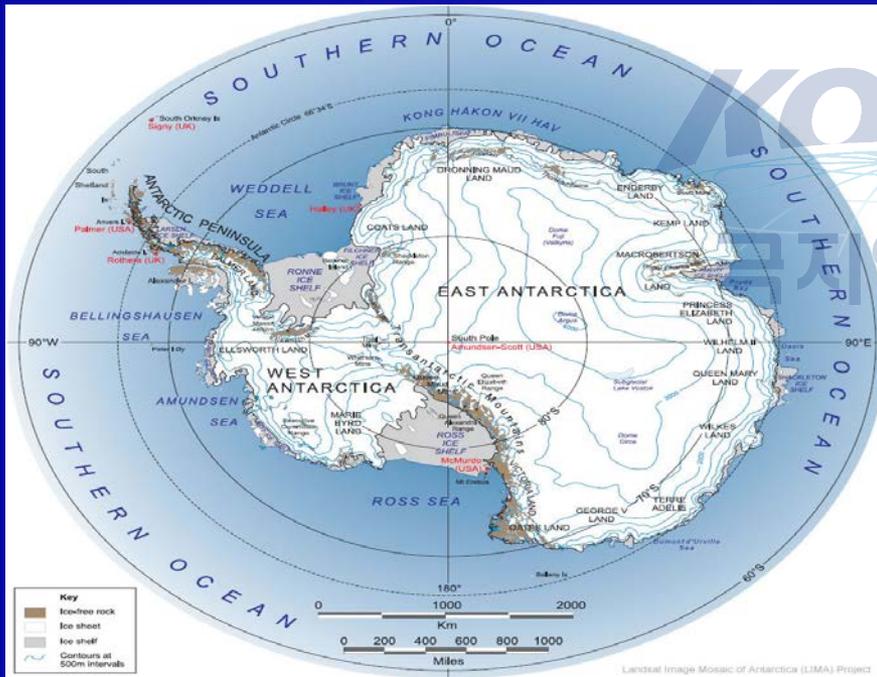
북극 연안국간 해양경계협정

- 1973년 캐나다-그린란드간 대륙붕경계협정
- 1979년 덴마크-노르웨이간 페로섬 대륙붕경계협정
- 1990년 미국-러시아간 해양경계협정
- 1995년 덴마크-노르웨이간 얀메인섬 대륙붕경계협정
- 2006년 덴마크-노르웨이간 스발바르섬 대륙붕/어업수역 경계협정
- 2007년 노르웨이-러시아간 바란거피요로드 해양경계협정
- 2011년 노르웨이-러시아간 바렌츠해와 북극해 해양경계조약

북극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주장



III. 극지법의 현안과 우리의 과제



1. 극지법의 현안

- 북극환경보호(블랙카본, 북극공해보호구역 설정)
- 북극해 항로의 법적 지위와 연안국의 환경규제
- 북극공해 어업제도(2015년 미국주도로 협정 체결 추진)
- 북극 대륙붕 외측경계(CLCS에서 러시아 신청 심의)
- 스발바르조약의 적용범위

- 남극 영유권 동결과 주권 주장국의 활동간 상충
- 남극조약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
- 남극 유전자원에 대한 생물탐사의 규제
- 남극에서의 형사관할권 행사
- 남극 불법어업 규제와 일본의 포경어업

2. 우리의 과제

- 극지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우리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검토
 - AC, ATCM 등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극지법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검토
-
- 극지법 연구세력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(인력 양성)
 - 인문, 과학분야 전문가와의 다학제적 공동연구 추진
 - 극지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위한 학·연·관 연계 체계 구축
 - Arctic Circle, Polar Law Symposium 등 극지법 논의 포럼에 지속적 참가,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동향 파악
 - 한중일 3국간 극지법 의제의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협의 체계 구축

경청해 주셔서
감사합니다!!!!